

## 1. 개정 이유

코로나19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,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 이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, 감염병이 발생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##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의2(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)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10의2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을 자격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다.

- 가. 감염병이 발생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
- 나.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